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재공모

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

2022년 9월 13일

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

Ι

공 모 개 요

- □ 시설현황
- 1)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
- 위 치 : 노원구 동일로174길 27(공릉동 622)
- 규 모 : 연면적 1,451m², 지상 3층
 - 주요시설 : 사무실, 교육실, 회의실,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
 - 입주시설 : 갤러리힐링카페, 노원세무서 공릉출장소,

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노원센터, 노원구상공회

- 개관일 : 2016. 4. 21.
- 2)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
 - 위 치 : 노원구 수락산로212-12(상계동 1035-12)
 - 규 모 : 연면적 434.07 m², 지상 5층
 - 주요시설 : 사무실, 교육실,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
 - 개관일 : 2022. 3. 30.

□ 공모절차

공고 및 신청서 접수	서류심사	대면심사	선정공고	계약체결
2022.09.13.(화) ~ 09.22.(목)	2022.09.23.(금) ~ 09.26.(월)	2022.09.27.(화)	2022.09.28.(수)	2022.09. 이내

□ 공모내용

○ 〈1관〉- 노원구 동일로174길 27(공릉동)

구 분	기업사무실	인큐베이팅사무실	공유사무실
입주공모 사무실 수	총 1실	총 1실	1실 / 총 9석 ※ 최대 3석 신청 가능
사무실 면적	25.13m² (304호)	10.35 m^{2} (키움3)	64.45m³ (전체 12석)
입주기간	1년 (2022.10.1. ~ 2023.9.30.)	1년 (2022.10.1. ~ 2023.9.30.)	6개월 (2022.10.1. ~ 2023.3.31.)
	※ 연장	가능 여부는 추후 공지 예정	
신청자격	 공고일 기준 지정·인증된 사회적 경제 기업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근로자 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영 업활동을 수행한 기업(매출이 발 생할 것) ※ 유급근로자가 없는 협동조합의 경우 1년 이상 분기당 매출이 발생할 것 	(공고일 기준 1년 이내	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 혹은 법인을 운영할 계획 을 가진 개인(팀)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(공고일 기준 6개월 이 내 설립된 기업)
	※ 사회적경제기업 : (예비)사회적기※ 자격 제한 : - 유사 창업보육기관- 노원사회적경제지		J주하고 있는 경우
대부료	조례에 의한 요율(10/1000)에 의거 산정/부과,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※ 2022년 평균 대부료 1관: 월 6,110원/㎡	없음	없음
제세 공과금 (전기요금)	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※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		없음
관리비	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※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		매월 3만원
선정 기준	- 구성원의 역량 및 자질 -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- 사업 성과 및 성장 가능성		

	-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-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
참고사항	 1관 주차공간 별도 업체에서 유료운영 중 1관 공동 사용물품 : 복합기, 팩스, 세단기 공유사무실 한 좌석당 책상, 책상서랍, 의자,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공유사무실 신청 시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(교육 등)에 참여해야 하며,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% 미만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음

○ 〈3관〉 - 노원구 수락산로212-12(상계동)

구 분	기업사무실	1인창업실		
입 주 공모 사무실 수	총 3실	1실 / 총 3석 ※ 최대 2석 신청 가능		
사무실 면적	26.86㎡ (402호, 502호) 26.87㎡ (501호)	26.87 1 5석)		
입주기간	1년 (2022.10.1. ~ 2023.9.30.) 매년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(최장 5년)	6개월 (2022.10.1. ~ 2023.3.31.)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(최장 1년)		
신청자격	- 공고일 기준 지정 인증된 사회적경제 기업 -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근로자를 고용 하여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한 기업(매출이 발생할 것) ※ 유급근로자가 없는 협동조합의 경우 1년 이상 분기당 매출이 발생할 것	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 혹은 법인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개인(팀)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(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) 		
	- <u>3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 우선 선정</u> ※ 사회적경제기업: (예비)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※ 자격 제한: -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-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			
대부료	조례에 의한 요율(10/1000)에 의거 산정/부과,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※ 2022년 3관 평균 대부료 : 월 4,250원/㎡			
제세 공과금 (전기요금)	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※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	없음		
관리비	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※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			
선정 기준	- 구성원의 역량 및 자질 -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- 사업 성과 및 성장 가능성			
가점 부여	-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-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			
참고사항	 3관 주차공간 부족 1인창업실 한 좌석당 책상, 책상서랍, 의자,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1인창업실 신청 시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(교육 등)에 참여해야 하며,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% 미만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음 			

□ 입주신청서 접수

○ 접수기간 : 2022.09.13.(화) ~ 09.22.(목) 18시 도착분

○ 접수방법

- E-mail 접수 (happynowon@hanmail.net)
 - ※ 이메일 제목 기업명 및 신청공간 기재

(예시) [기업명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1관 기업사무실 입주공모]

※ 이메일 접수 후,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해야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 (070-8893-5233)

○ 제출서류

구 분	제출서류	
기업사무실	(1) 입주신청서 1부(별지1) (2) 기업소개서 1부(별지2) (3) 사업계획서 1부(별지3) (4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(별지4) (5) 인증서,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(6) 기업증빙서류(법인등기부등본,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-해당기업 제출,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) ※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 근로자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영업 활동을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(최근 3개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) ※ 유급근로자가 없는 협동조합의 경우 1년 이상 분기당 매출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) (7)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(8) 재무제표 등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(9)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부 -해당 기업만 제출— (10)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(11) 대표자 이력서	
인큐베이팅사무실 공유사무실	(1) 입주신청서 1부(별지1) (2) 기업(단체)소개서 1부(별지2) (3) 사업계획서 1부(별지3) (4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(별지4) (5) 기업(단체)증빙서류(법인등기부등본,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 설립허가증,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)-해당 기업에 한함-(6) 심사용 발표자료(PPT 또는 PDF파일 10장 이내)	

Ⅱ │ 심사 및 결과 발표

□ 심사기간 : 2022.09.23.(금)~09.27.(화)

□ 심사방법

구 분	방 법	비고
1차 서류심사	서류심사 후 대면심사 대상 개별통지	적격 여부 심사
2차 대면심사 (프리젠테이션)	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 대상 심사위원회 심의	최종 및 예비순위 선정

□ 1차 서류심사

○ 심사기관 :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

○ 심사기준 : 신청자격 해당 여부

□ 2차 면접심사 (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)

○ 심사기관 : 노원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심사위원회

○ 심사방법

- 기업 당 사업계획 10분 내외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

○ 심사기준

- 기업 및 구성원의 역량, 사업계획 및 지속가능성,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, 사회적목적 및 소셜임팩트
- 심사결과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
○ 가점 부여

-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워구 소재 기업
-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

○ 위원회 개최(예정)

- 일시: 2022.09.27.(화) 10:00 센터1관 2층 교육실 (센터1관 위치 : 서울시 노워구 동일로 174길 27)

□ 선정공고

○ 일시 : 2022.09.28.(수)

○ 방법 :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

(happynowon.kr)

- □ 입주 예정일(공통)
- 2022년 10월 4일(화)

Ⅲ 기타사항

- □ 입주기업 관리 및 연장 심사
 - 입주기업 계약해지 및 퇴거
 - 사회적경제기업 자격 상실 시
 - 협약서 및 지원센터 내부 규정 미준수 시
 - ※ 1차 시정조치 후 지정된 기일까지 불이행 시
 - 연장심사 : 매년 연장심사를 거쳐 부적격 업체는 계약종료
 -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 및 운영 참여, 센터 이용(활용)도, 지역사회 기여 등 평가로 결정
- □ 입주기업 준수사항
 -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
 - 임대 목적물을 입주승인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
 -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및 본·지점 소재지 임 대 목적물 주소지로 변경 등록
 - (※ 본점이 아닌 '지사 및 영업소 등'으로 신청한 경우, 심사를 통해 노원구 내 사업추진계획 등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)
 - 입주기업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대표 1인 참석
 - 센터 주관 공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
 - 기타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
- □ 기타 유의사항
 - 신청기업의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 으며, 변경된 심사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함 (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)
 - 신청접수현황. 심사내용 및 신청기관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 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
- 최종 선정된 기업은 공지된 입주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입주 (단,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최장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함)
- 문의 :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☎ 070-8893-5233

붙임 1. 공간별 입주 신청 제출서류 서식 각 1부. 끝.